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

2006. 2

유경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경제나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 상태이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잠재파산 규모를 신용불량자 자료, 파산자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잠재파산, 파산신청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론적인 파산결정요인으로는 질병, 실직 등 불운한 사건, 파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편익,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옵션가치와 기회비용, 가압류와 같은 추심제도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금전적 편익이 클수록 파산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파산이 순부채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선택적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관련 변수는 파산확률과 負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득충격이 파산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파산급증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잠재파산규모 축소를 위해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파산계층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파산자급증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전담할 파산전담 법원과 이를 지원할 가칭 ‘파산관리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파산급증 및 파산규모 확대에 의한 금융회사의 손실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파산결정의 선택적 측면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재건형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개인파산, 잠재파산, 금전적 편익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D12, D14, K35

I. 머리말

최근 들어 가계부문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에 따라 2002년~2003년 사이에 발생한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문 건전성 지표인 신용불량자수의 점진적인 감소와 은행 연체율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개인저축률의 반등 등은 가계의 채무 부담능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가계부문 재정건전성의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인파산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0)에 따르면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통상 파산신청 수보다 1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선행하며 이자부담률의 경우 1년의 시차를 두고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급증한 가계부채가 2003년 이후 개인파산신청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개인파산 급증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파산의 급증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재파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파산 규모와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개인파산 문제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파산연구가 대부분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 본 연구는 개인의 전략적 행태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파산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기존 파산이론과는 달리 우리나라

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5. 6

현실을 보다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해 잠재파산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잠재파산규모를 추계하고 규모 확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의 논의들이 대부분 파산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 제한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제 논의를 종합하여 이를 우리나라 가계 및 파산자 자료를 통해 분석한 실증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II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현황 및 개인파산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개관하였다. III 장에서는 기 발표된 신용불량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잠재파산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IV장에서는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해 보고 파산자 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을 실증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개인파산 현황 및 기존연구의 개관

1.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제도화된 개인파산²⁾은 1997년 첫 신청자가 나온 이래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오다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3년 3,856건에서 2004년 12,317건으로 3.2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 9월말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3,756건으로 2001년부터 작년까지의 신청건수를 초과하였다. 특히 월별 증가율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 동월 대비 3배까지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파산급증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신용불량자의 급증이 제기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 대비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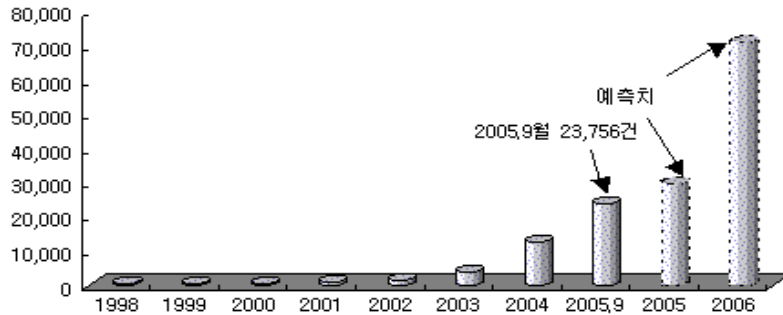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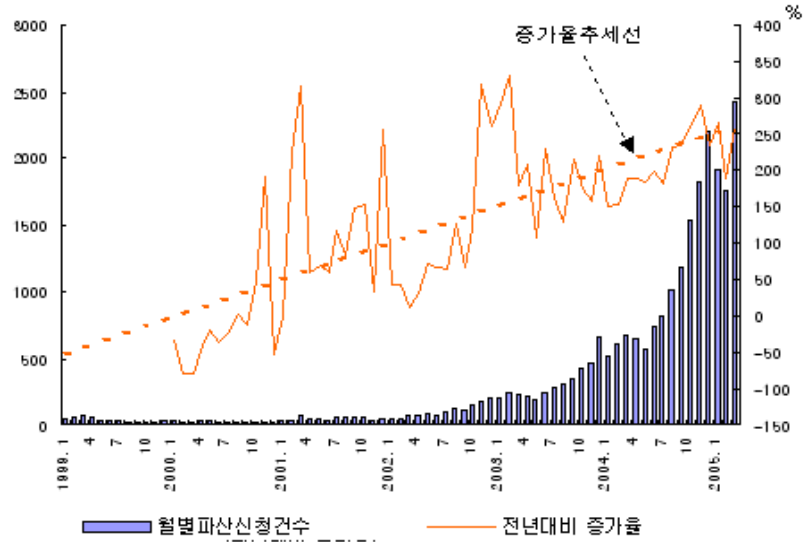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경제나 인구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나 지급이자 비율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훨씬 적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capital gearing ratio)은 2005년 6월 말에 49.3%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0% point 이상 높은 수준으로³⁾ 이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이 외부충격이나 금리상승에 대한 충격 흡수 여력에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10,000명당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영국 7명, 일본 19명, 미국 5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명에

2) 개인(소비자)파산제도란 채무자인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5.10

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림 1> 월별·연도별 개인파산 신청건수의 추이



주: 2005년 및 2006년 예측치는 월별 파산신청자의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자체 계산한 수치임
 자료: 법원행정처(2005)

<표 1>

신용불량자 대비 개인파산 신청추이

(단위 :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용불량자(A)	1,996,000	2,084,000	2,450,000	2,636,000	3,720,000	3,615,000
개인파산(B)	505	329	672	1,335	3,856	12,317
B/A(%)	0.025	0.016	0.027	0.051	0.104	0.341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법원행정처

<표 2>

개인파산과 경제규모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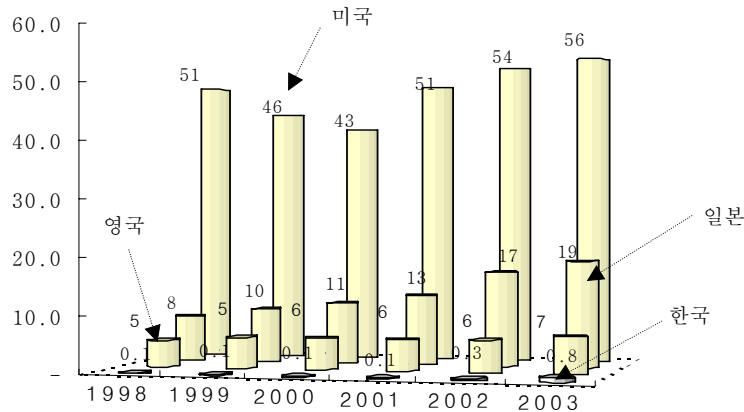
(한국=1, 2003)

	미 국	일 본	영 국
GDP	18.1	7.1	3.0
1인당 GNI	3.0	2.7	2.4
부채/가처분소득	0.9	1.0	-
지급이자/가처분소득	0.7	0.5	-
개인파산신청 건수	300	63	10

자료: 한국은행, 법원행정처, 각국의 파산통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04)

<그림 2>

인구 10,000명당 개인파산 신청건수



자료: 통계청, 법원행정처 및 각국 개인파산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0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 파산 신청이 경제적인 요소 이외에 사회적·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면서도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비공식 또는 잠재파산자⁴⁾가 상당 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2. 기존연구의 개관

파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학, 사회학, 소비자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의 내용도 대부분 파산제도 자체에 관한 설명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소개 및 비교 등에 머무르고 있어 파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파산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법학·사회학 분야 연구에서 파산은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내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제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파산선택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행위로 인식하고 따라서 파산결정이 개인의 비용-편익 비교(cost-benefit analysis)를 근거로 한 선택적 행위로 간주한다.

반면 개인파산에 관한 사회학이나 법학분야의 연구들은 파산제도를 질병, 실업, 이혼과 같은 불운한 사건들(adverse events)에 대비한 보험적인 수단으로 보고 파산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조한다. Sullivan et al. (1989)은 1980년대 파산신청자 표본에 관한 기술적인 자료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개인은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부채상환능력이 손실되어 파산을 신청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산에 관한 이와

4) 본 연구에서 비공식 파산(informal bankruptcy)과 잠재파산은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구분한다면 비공식 파산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나 공식적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잠재파산은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순부채가 많아 파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잠재파산은 단순히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financial benefit)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비용이 커서 공식적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

같은 시각은 대부분의 언론매체⁵⁾에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은 보다 불확실해지고 위험해진 경제상황을 파산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특히 은행, 카드회사 등 소비자 금융업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이 개인파산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에서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게 되자 경제학계에 서도 파산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파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및 실증 분석으로 이들은 파산급증의 원인으로서는 완화된 파산법, 그리고 사회적 汚名(stigma)의 감소와 같은 불명예·수치의 감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에서 파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파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완화된 파산법 특히 면책자산의 확대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완화된 파산법이 개인파산 증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일치된 결과는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BO, 2000).

Rea(1984)와 Boyes & Faith(1986)는 1978년의 미국 파산개혁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고 Gross & Souleles(2002)는 파산법의 완화와 파산의 사회적 오명 감소를 미국 경기확장기에 있어 파산 급증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방식은 파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경제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오명과 같은 심리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Stigma theory의 이론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개인들이 파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파산이 가져오는 금전적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분석되고 있다. Fay, Hurst, and White(2002)는 미국 개인파산의 증가는 대부분 파산을 선언하는데 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소비자의 학습을 반영한다는 주장(Learning theory)과

5) 대표적으로 미국의 Washington post는 사실 (2000.2.18)에서 “대부분의 파산은 질병, 실직, 결혼의 실패 등과 같은 불운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부정적 사건 가설(Adverse event hypothesis)의 적합성을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파산 결정은 실직, 질병 등과 같은 소득충격으로 인한 상환능력의 상실보다는 파산이 가져오는 금전적 순편익에 의존하며 따라서 파산결정이 개인들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Dawsey & Ausubel(2001)과 White(1998) 등은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파산결정모형에 있어 기존의 파산-상환이라는 양분론적인 모형 대신 잠재파산 개념을 도입하여 파산의 결정과정을 채무불이행-잠재파산-파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Dawsey & Ausubel(2001)와 VISA survey(1997)에 따르면 미국 내 신용카드사의 대손상각처리 계정 중 약 60% 이상이 파산이외의 다른 손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이 높은 수치는 미국에서 잠재파산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라 주장하였다. 또한 White(1998)는 1992년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약 1% 정도의 가계가 파산을 신청하고 있지만 현행 파산제도 하에서 최소 15%의 가계가 잠재 파산상태에 있다고 보고하고 미국의 파산자 통계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hite(1998)와 Long(2001)은 채무자들이 잠재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로 채권자의 채권추심행태가 완화되거나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파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옵션 가치와 기회비용 등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들을 파산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잠재파산 규모의 추계와 발생원인

1. 잠재파산 규모의 추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공식 파산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지칭하는 반면 본고에서 정의되는 잠재파산은 실제 상환능력과는 상관없는 보다 이론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잠재파산은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인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규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잠재파산상태를 결정짓는 금전상의 순편익은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파산시 면책되는 부채)과 비용⁶⁾(처분대상 자산과 파산신청관련 비용 등)의 차이로 정의되며 잠재파산을 감안한 파산의 결정요인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수의 신용불량자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의 파산에 관한 양분법적인 논의에 비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잠재파산 규모를 신용불량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면 약 43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가 비공식적인 파산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조사자료⁷⁾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자력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계층이 12%에서 22%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대략 43만명에서 79만명 가량이 비공식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6) 개인파산과 관련된 비용을 보다 넓게 정의 할 경우 파산의 회계적인 비용 외에 파산의 기회비용과 옵션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

7) 동 자료 중 상환능력 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신용불량자중 19%만이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12%는 채무제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이들을 잠재파산자로 가정하였다.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참고자료, 2004.3)

8) 2004년 12월말 신용불량자수 361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환하는데 8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자(22%)를 비공식적인 파산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파산규모는 79만 명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들 비공식 파산계층 중 실제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였지만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생계형 파산 대상자 규모를 추계하여 보면 전체 신용불량자의 4%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5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⁹⁾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현재 신용불량자중 가장 열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신용불량자 31만 명(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신용불량자 15.5만명, 영세자영업자 15.3만 명)중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약 14만명으로 추계된다.¹⁰⁾

이와 같은 잠재파산 규모의 추정은 간접적인 추계방법으로 해석상의 한계가 따르지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 또는 비공식파산 상태에 있는 계층이 실제 파산신청건수에 비해 훨씬 많이 존재¹¹⁾하며 과도한 규모의 이들 잠재파산계층이 개인파산 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잠재파산 발생의 원인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파산신청건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잠재파산자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① 파산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높은 반면 편익이 낮고 ② 잠재파산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③ 부채탕감에 대한 채무자의 기대 형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파산으로 인한 법적 비용, 미래 신용접근의 차단, 직업상실 및 구직의 어려움, 사회적 汚名(stigma) 등 파산과 관련된 비용이 파산신청자에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계층은 77.3%이고,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중 상환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계층이 9.6%로 이들 계층을 상환능력을 실제로 상실한 생계형 파산 대상자로 추계하였다(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보도자료, 2005.2).

10) 정부의 '3.23 신불자대책'에 따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31만 명중 11만 1881만 명이 채무조정신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 대다수가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잠재 또는 비공식 파산계층인 것으로 보인다.

11) 추정된 비공식 파산 규모는 2004년 전체 신용불량자 수의 12~31%를 차지하며 2004년 개인파산 신청건수 대비 36배에서 9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산선고 시 남게 되는 파산기록은 잠재파산으로 인한 연체기록에 비해 보다 오래 지속¹²⁾되고 대출금액, 금리 수준 등 개인의 금융활동과 직장 및 구직활동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파산으로 인한 직접비용에는 파산과정 중에 처리되는 개인자산과 법적 비용(변호사비, 소송비용)이 포함되며 이들 비용¹³⁾은 한계상황에 놓인 파산신청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노력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부채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잠재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지만 연방법에 의거, 급여 중 75%가 보호되고 비면책 자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 후어나 처분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수준별 차등압류제가 실시되어 4인 가구 최저생계비(120만원)이하의 채무자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채탕감에 대한 채무자의 기대(expectation)를 증대시켜 잠재파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시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잠재파산자 규모가 확대된 배경으로는 2001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발생한 가계 부채의 급증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시기에 있어 가계 부채 증가율은 적정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신용불량자 규모가 급증하였고¹⁴⁾ 이들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됨에 따라 잠재파산 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12) 파산의 경우 7년간 기록이 유지되는 반면 일반적으로 다른 이유로 인해 대손상각된 부채 기록의 경우에는 5년 이후 삭제된다.

13)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통상 관보 게재료, 인지료, 송달료, 신문광고료 등 절차비용(약 30만원에서 60만원)과 변호사비(약 100~2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적정부채수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최공필 외(2004)를, 신용불량자 급증원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현의 외(2004) 참조.

IV. 파산의 결정요인 분석

1.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개인파산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잠재파산→파산신청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불운한 사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재해, 실업, 이혼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대폭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소득 및 지출 충격여부가 파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추정식에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이 파산할 확률과 유의한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금전적 편익)

가계는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파산신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편익(financial benefit)이 증가할수록 파산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지며 파산에 따른 금전적 편익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inBen_{it} = \max [D_{it} - \max [W_{it} - E_{it}, 0], 0] \quad (1)$$

여기에서 D_{it} 는 개인 i 의 t 기에 파산을 신청할 때 부채액

W_{it} 는 개인 i 가 기간 t 기에 보유하고 있는 富

E_{it} 는 파산시 면책자산 규모

한편 파산 시 W_{it} 가 E_{it} 를 초과한다면 부채 D_{it} 는 상환의무가 면책되고 $W_{it} - E_{it}$ 는 처분될 것이며 이러한 $FinBen_{it}$ 변수가 파산결정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D_{it} 가 150이고 W_{it} 가 100이며 E_{it} 가 50일 경우 $FinBen_{it}$ 는 100인 반면, 다른 경우가 동일하고 E_{it} 가 150으로 증가하게 되면 $FinBen_{it}$ 는 150이 되어 면책 자산수준에 따라 채무자가 얻는 금전적 편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 금전적 편익 변수가 파산신청 확률과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개인은 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파산에 대한 유보가치(reservation value)를 설정하고 파산관련 비용이 이를 초과할 때 파산을 신청하는 전략적 행태(strategic behavior)를 보이게 된다.

(파산의 옵션가치와 기회비용)

개인파산의 결정에 있어 개인은 현재의 비용-편익뿐이 아니라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옵션가치와 기회비용을 파산 결정시 고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주장은 Long(2001)의 개인파산 신청의 단순 이산모형(discrete time model)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동 모형에서 개인은 위험중립적이고 현재 개인파산 신청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이 특정 시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Y 라 하고 만약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금기의 비용은 c_1 또는 c_2 로 표시되며 이는 각각 확률 p , $(1-p)$ 로 결정된다. 한편 $c_1 > c_2$ 로 가정하고 만약 비용이 c_2 이면 파산 신청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러나 c_1 이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즉, $Y - c_2 > 0 > Y - c_1$, 할인율은 r 로 가정한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 결정은 파산으로 인한 편익의 현재 가치가 미래 기대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즉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 순자산 가치(NPV)가 양일 경우, 즉 $V_1 = Y - p \cdot c_1 - (1-p)c_2 > 0$ 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 가능하며 비용의 실현은 다음 기에 개인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기에 새로운 정보가 입수된다고 가정함에 따라 현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대안은 파산신청을 금기에 하거나 또는 금기에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기에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 기에 비용이 c_2 로 나타난다면 파산을 신청하겠지만 만약 c_1 으로 나타난다면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 파산신청의 순 기대가치는 $\frac{1-p}{1+r}(Y - c_2)$ 이다. 결국 개인파산의 문제에 대한 해는 금기 파산신청의 순현재가치가 다음 기 파산신청의 순현재가치 보다 큰 경우에 한해 금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Y - p \cdot c_1 - (1-p)c_2 > \frac{1-p}{1+r}(Y - c_2)$$

$$\Rightarrow V_2 = Y - p \cdot c_1 - (1-p)c_2 - \frac{1-p}{1+r}(Y - c_2) > 0 \quad (2)$$

한편 $\frac{1-p}{1+r}(Y - c_2) > 0$ 이므로 개인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금기 파산의 현재가치는 $V_1 > V_2$ 가 되어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경우 금기 파산신청을 보다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이 불가역적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음 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탄력성(flexibility)으로 인해 파산은 옵션가치를 갖게 된다. 즉, 경기가 불확실해

지거나 파산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파산의 옵션가치가 증대되어 파산 신청보다는 잠재파산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추심제도)

가압류와 같은 추심제도가 강화될 경우 파산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져 잠재파산에서 파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을 고려한 파산모형¹⁵⁾에서는 잠재파산에서 파산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채권자의 추심행태나 가압류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 모형에서 채무자는 지불과 연체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며 만약 연체를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잠재파산, 파산 그리고 연기된 지불(deferred payment)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채권가압류에 관한 법률이 이들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채권가압류조치¹⁶⁾는 채무자들을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상환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동시에 잠재파산에서 공식적인 파산신청상태로 이동시키게 된다. 아울러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가압류에 대해 파산을 통해 이를 정지시킬 수 있어 채권가압류의 범위 및 강도가 파산 및 잠재파산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추심이 채무불이행자 모두에 대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동 모형에서 잠재파산은 파산과 함께 균형의 해로 존재하게 된다. 채권자의 추심이 완화되거나 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파산 보다는 잠재파산 상태를 선택하게 되며, 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채권자의 수가 많을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15)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유경원(2005)의 부록 참조

16) 채권가압류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intangible 자산, 즉 임금 또는 은행 예금과 같은 자산의 일정부분을 가압류하며 채무자의 고용주 또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추심도 가능하다.

2. 파산의 결정요인 추정

본 연구에서는 Fay, Hurst, and White (2002)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개인 파산의 결정요인을 OLS와 Probit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파산이 주는 금전적 편익과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인구학적인 요소(나이, 성별, 결혼 여부, 자녀수),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수준과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질병, 실직, 이혼 등)이다. 이를 반영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_{it} = F(\text{FinBen}_{it}, A_{it}; Z_{it}, I_{it}) \quad (3)$$

여기에서 B = 파산신청시 1, 그 밖의 경우 0

FinBen = 개인파산 신청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부채-자산)

A = 질병으로 인한 금전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Z = 나이, 성별, 가구크기, 교육수준, 자영업 여부, 이혼여부 변수

I = 소득 및 지출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산자 자료¹⁷⁾는 파산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 채권일람표, 자필진술서, 부채증명원, 가계수지표 등의 기록과 법원이 파산 신청인에게 자료를 덧붙일 것을 요구한 보정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비교 대상인 개인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가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파산자 자료를 토대로 파산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파산자의 나이는 평균 37.8세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서울신문사, 「2004 개인파산 보고서」 조사 자료로 조사기간 및 분석대상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산신청자들은 평균 6.6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6년4개월 동안 사용해 왔으며 평균 7년5개월 동안의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자의 부채수준은 평균 1억 4,527만원에 1인당 채권자는 1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 (3)을 토대로 추정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전적 편익이 커질수록 파산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파산 시 상황이 면제 되는 순부채수준이 파산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금전적 편익과 파산확률은 비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순부채 규모가 특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파산확률이 상승함을 나타낸다.¹⁸⁾ 또한 순부채 규모가 증가할 경우 파산확률이 역 U자 형태로 변화하는 점에 비추어 분석대상 가계 중 일부는 순부채 수준이 고액이면서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잠재파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소득변수가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부채 규모에 따라 파산확률이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개인파산이 외생적인 소득충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선택적·전략적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관련 변수는 파산확률과 負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 또는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소득충격이 파산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Probit의 추정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과 같은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파산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Fay et al. (2002)의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¹⁹⁾

18) 추정결과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파산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가계의 순부채 규모는 2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미국의 경우 소득충격은 파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금전적 순편익 변수는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 3>

파산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변수	OLS1	OLS2	Probit1	Probit2
금전적 편익	0.0162*** (0.0042)	0.0165*** (0.0043)	0.0011*** (0.0003)	0.0011*** (0.0002)
(금전적 편익) ²	-0.0004*** (0.0001)	-0.0004*** (0.0001)	-0.0616*** (0.0184)	-0.0601*** (0.0172)
교육수준	-0.0057*** (0.0016)	-0.0056*** (0.0015)	-1.3215*** (0.3000)	-1.3103*** (0.2853)
나이	0.0006*** (0.0002)	0.0006*** (0.0002)	0.0920 (0.0930)	0.0626 (0.1003)
(나이) ²	-0.00001*** (0.000004)	-0.0001*** (0.000004)	-0.0015** (0.0013)	-0.0013* (0.0011)
성별	-0.0014 (0.0022)	0.0014 (0.0023)	0.4274 (0.3838)	0.3937 (0.3606)
자영업 여부	0.0001 (0.0003)	0.0003 (0.0009)	0.7197 (0.4770)	0.7815 (0.5037)
자가소유 여부	-0.0125*** (0.0030)	-0.0121*** (0.0029)	-0.6673*** (0.1847)	-0.6718*** (0.1876)
이혼 여부	0.0092*** (0.0024)	0.0090*** (0.0025)	0.5387** (0.1245)	0.5562*** (0.1235)
가구크기	-0.0029** (0.0013)	-0.0030*** (0.0013)	-0.6672*** (0.1847)	-0.6718*** (0.1876)
가계지출	0.027 (0.017)	0.029* (0.017)	0.0039 (0.0040)	0.0037 (0.0044)
가계소득	-0.0171* (0.0097)	-0.0161* (0.0094)	-0.0058* (0.0030)	-0.0062* (0.0033)
질병		0.0294 (0.0137)		1.4959*** (0.4152)
상수	0.0478*** (0.0138)	0.0453*** (0.0137)	1.9853 (2.0768)	2.6503 (2.1498)
Number of Obs	4301	4301	4301	4301

주 : 1)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2) ()안은 heterosc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파산의 결정에 있어 질병, 실업과 같은 소득충격이 파산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계층²⁰)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다른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주택비보유자일수록, 가구크기가 작을수록, 이혼하였을수록 파산확률은 높아지며 연령과는 선형이 아닌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개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파산신청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에 대한 신용 및 자산관리 등 다양한 경제교육이 공공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의 연령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 이를 때 파산신청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잠재 파산상태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채권자의 딜레마(Creditor's Dilemma)에 관한 실증분석

채권자의 딜레마 모형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pay-off 행렬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표 4>에 따르면 채권자 1과 채권자2의 경우 채무자를 워크아웃 시키는 것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 및 가압류가 균형이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나타낸다.²¹⁾

20) III장의 잠재파산 규모에 대한 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계형 파산대상자는 약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개인파산 신청자 대비 12배에 해당한다.

21) 미국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 파산부 판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There is no incentive for creditors to work things out. The rewards go to the meanest son of a bitch in the valley. They get paid first" *Judge Lief Clark, quoted in USA Today, Nov.20,1998*

<표 4> 채권자의 딜레마 모형

		채권자 1	
		워크아웃	추심/가압류
채권자 2	워크아웃	(10, 10)	(0, 15)
	추심/가압류	(15, 0)	(5, 5)

즉, 채권자의 딜레마가 시사하는 바는 채무자의 워크아웃이 실질적으로 파산을 통한 청산보다 전체 채무를 보다 많이 상환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는 채권선점을 위해 임금을 가압류하고 추심노력을 강화하여 전체적으로는 負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파산신청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딜레마는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채권자 측면의 요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잠재파산에서 파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채권자의 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해 보았다. 본 분석에서는 앞서 사용한 2002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파산신청자중 기록을 입수한 30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고한 변제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한 시점부터 실제파산을 신청한 시점까지를 잠재파산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²²⁾

특히 본 분석에서는 채권자의 딜레마 모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이 채무자의 파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즉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채권자의 수가 증가할 때 채무자는 채권 추심압력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보다 신속히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채권자의 수와 잠재파산기간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파산자 자료의 관측치 수가 작아 결과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하지만

22) 동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카드장려책이 본격 시행된 2000년 이후 1인당 4~5장의 카드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7년까지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Pooled OLS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잠재파산 상태에서 파산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결과는 추심압력이 커짐에 따라 채무자의 잠재파산에서 파산으로의 선택 확률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표 5>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부채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잠재파산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 상환노력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중 채무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들은 원리금의 조정 등 유인제공을 통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재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채권선점 경쟁을 통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비효율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잠재파산 기간의 결정요인 추정결과

	잠재파산 기간
성 별(남자=0, 여자=1)	2.0395 (1.4557)
나 이	0.1169 (0.0821)
교육수준	1.5077** (0.6172)
가구크기	-0.8974 (0.6002)
파산비용	-2.2411 (1.393)
상환노력	-4.5188*** (1.4002)
ln(부채수준)	3.8404** (1.4920)
채권자수	-0.2991** (0.1447)
상 수	-28.137** (12.614)
Number of Obs.	179

-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2) ()안은 Heterosc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3) 종속변수인 잠재파산기간은 파산신청자가 채무자 불확실하다고 느낀 시점으로부터 실제 파산신청까지의 기간으로 정의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구성의 경직성, 높은 가계 부채 및 이자부담 수준, 은행 대출의 높은 가계대출 비중과 상당한 수의 잠재파산자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파산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실물 자산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양상은 파산위험에 대한 노출을 저소득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에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자산가격 위험에 대한 가계의 노출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가계를 매개로 동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³⁾ 나아가 소비자금융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과 지급이자 비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파산신청건수는 파산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지 않은 잠재파산 추정규모와 파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역시 향후 개인파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경제여건에 따라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과급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파산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2~3년간은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하여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로 예측되는

23) 우리나라 은행대출 중 50%가량이 가계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의 가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01년에 48%에서 최근 73%까지 상승하는 등 가계 신용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 무엇보다도 동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잠재파산자 규모가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잠재파산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둘째, 잠재파산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파산자 급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파산자 급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해저드 등 채무자들의 전략적 행동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잠재파산 규모의 축소

(저소득 계층의 자산형성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계층의 경우 낮은 저축률로 인해 자산형성이 부진함에 따라 파산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계층의 자산축적을 유도하고 잠재파산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과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형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의 Saving Gateway, 미국의 개인발전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와 유사한 저소득계층의 저축 및 소액금융(Microfinance)에 대한 정책적 지원²⁴⁾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금융

24) 영국의 Gateway와 미국의 IDA는 저소득계층의 저축에 대해 정부나 공익단체가 matching fund 형태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잠재파산 또는 파산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증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개인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파산신청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에 대한 신용 및 자산관리 등 다양한 경제교육이 공공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낮추기 위해 저축, 신용 및 노후자산 관리 등에 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금융교육실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2002년부터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내에 설치하여 운영 하는 등 정부의 금융교육 강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저소득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개인 파산제도의 사회안전망²⁵⁾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생계형 파산신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 실업과 같은 소득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²⁶⁾ 공적 사회보험의 빈곤층 보호기능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득충격에 대한 사적 대비수단으로써 적은 보험료로 사고나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상해보험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파산비용 경감)

상당한 규모의 잠재파산의 존재는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가계부채 건전성 지표와 현실간의 괴리²⁷⁾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25)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노령,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장치로 1차 사회안전망은 연금, 보험 등 사회보험,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 3차 안전망은 긴급구호로 구성된다.

26)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계층의 가입률이 각각 64%와 79%인 반면 저소득계층은 이보다 훨씬 낮은 30%와 5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경부 외, 「참여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도자료, 2004.11)

27) 가계의 금융부채는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부실채권의 경우 대손상각이 완료되면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되는 반면 가계의 입장에서는 파산-면책 선포가 없을 경우 반영구적 채무부담으로 남아있게 된다.

같이 많은 수의 채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부채증가의 악순환에 직면할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는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반적인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²⁸⁾의 실효성제고를 통해 잠재파산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충격으로 인해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 파산계층의 경우 개인파산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경감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재파산에서 실제 파산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파산의 높은 기회비용과 옵션가치를 낮추어 잠재파산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의 기회비용으로 제기되는 직장 상실과 구직의 불확실성이 파산신청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²⁹⁾하고 있으므로 미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斷續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인해 개인파산의 옵션가치가 커진 상태이므로 상시적인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의 활용을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8)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상환조건의 조정 및 채무탕감 등을 통해 개인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크게 채무조정제도(개인 워크아웃제도 및 개인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로 구분된다.

29)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자에 대한 특별기록(7년)을 금융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5년) 보다 더 오래 남겨 놓아 정상적인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파산자 급증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파산전담 법원과 ‘파산관리청’의 신설 검토)

파산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³⁰⁾ 및 파산채무 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 법원과 이를 지원하는 가칭 ‘파산관리청’³¹⁾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산관리청은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의 관리를 통해 파산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금융회사와 개인 간 이해조정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자발적인 조정을 통한 해결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파산관리청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면책결정시 은닉재산에 대한 사후 조사기능을 부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잠재파산 상태에 있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상담을 실비로 제공하여 이들이 채무규모를 조정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산 및 잠재파산 결정이 법률 및 소송관련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소비자 단체의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시스템 개선)

향후 파산신청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파산결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전략

30) 인구 및 경제규모, 가계 부채규모 그리고 잠재파산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2~3년 이내에 파산신청건수는 연 10만 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1) 영국의 파산관리청인 Insolvency Service는 법원을 보조하여 파산과정 및 절차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파산의 원인 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적 행태 가능성은 개인파산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액 신용대출의 부실로 경영악화 상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파산 급증이 지속되고 파산 채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³²⁾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수준에 대한 결정이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결정이 아닌 경영층의 정책적 판단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은 파산이 대중화되어 있는 미국의 상업은행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³³⁾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현재의 충당금 적립수준이 예상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파산확률과 여신별 파산 시 손실률과 같은 기초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재건형 개인회생제도 중심의 채무자 구제제도 구축

우리나라와 같이 채권자의 수가 많고 법적 중재과정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 보다는 청산형 파산이 빈번히 사용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파산과 관련된 벌칙은 자원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워 이론적으로 청산형 파산제도는 후생을 감소시키는 가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청산형 파산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고금리라는 형태로 개인파산의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파산의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성, 그리고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파

32) 개인파산이 급증함에 따라 추정손실채권에서 발생하는 기대이익의 감소도 불가피 하며 개인파산이 급증할 경우 일시에 요주의 채권 혹은 정상채권까지 채무조정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3) 2004년 미국 상업은행의 coverage ratio는 175%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낮은 96% 수준이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5.6)

산결정의 내생적 측면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재건형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잠재파산자의 다양한 특성 및 경제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보다 다양한 채무자 회생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채무액수가 소액일 경우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여 채무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영국의 조정제도³⁴⁾ 등과 유사한 자발적 소액채무조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액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개인파산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상담의 절차³⁵⁾를 거쳐 일정기간에 걸친 상환계획을 마련케 하거나 채권자와의 자율적인 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파산신청은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³⁶⁾함으로써 파산이 그야말로 최종적인 선택의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34) 영국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신청 시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적 개인워크아웃제도인 개별조정제도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력갱생을 유도하고 있다.

35) 독일의 경우 파산신청 시 상담 확인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36) 미국의 경우 2005년 개정된 파산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은 파산신청요건을 엄격히 하여 州別로 정해진 연간 평균소득 이하일 경우(means test)에 한해 파산을 허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13조(Chapter 13)하의 파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난도(1998),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파산상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정기학술대회
- 김준기, 배병호, 강득록(2004),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 2004-5, 한국은행 조사국
- 김현의, 강종구, 정형권, 유경원, 진익 (2004), “금융시장에서의 모럴해저드 현상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총서』 제10호
- 박종현(2003),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의 정비”,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오명근, 송태경(2005), 「개인파산제 개선, 현황과 개선안」
- 유경원(2005),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39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영기(2002), 「외국의 소비자파산 구제제도」, 금융감독원 참고자료
- 임치용(2004), 『파산법연구』, 박영사
- 최공필, 이명환, 이병윤, 이진범(2004),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정책조사보고서』 2004-03,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은행(2005),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 허경옥(1999), “우리나라 소비자 파산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제10권 3호
- 홍종학(2004), “한미 비교를 통한 신용카드 문제의 분석”,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CBO(2000), Personal Bankruptcy: A Literature Review
- Boyes, W.J. and R.L. Faith(1986), Some Effects of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19, pp.139-149
- Dawsey, A. and L. Ausubel(2001), Informal Bankruptcy, mimeo, University of Maryland

- Efrat, R.(2002), "Global Trends in Personal Bankruptcy", *The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Vol.76
- Fay, S., E. Hurst, and M.J. White(2002), The Household Bankruptcy Deci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2002, pp. 706-718
- Gross, D. and N. Souleles(2002),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Bankruptcy, and Delinquency,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15, pp.319-47
- Long, Cheryl(2001), Explaining Personal Bankruptcy Filing: An Option Value Approach, mimeo, Washington University
- Rea, S.(1984), Arm-breaking, Consumer Credit and Personal Bankruptcy, *Economic Inquiry*, Vol.22(2), pp.188-208
- Sullivan, T., Warren, E. and J. Westbrook(1989), *As We Forgive Our Debtors: Bankruptcy and Consumer Credit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ullivan, T., Warren, E. and J. Westbrook(2000), *The Fragile Middle Class: Americans in Debt*, Yale Univ. Press
- White, M.(1998), Why Don't More Household File for Bankruptcy?, *The Journal of Law and Organization*, Vol.14, No. 2, pp. 205-231

<부 록>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파산여부	4690	0.0043	0.0651	0	1
금전적 편익	4690	4899.5	7734.8	0	49000
(금전적 편익) ²	4690	8.37*10 ⁷	2.5*10 ⁸	0	2.40*10 ⁹
교육수준	4690	4.97	1.42	0	9
나이	4690	40.28	14.1	17	69
나이 ²	4690	1822.6	1190.5	289	4761
성별	4690	1.51	0.4999	1	2
자영업 여부	4690	0.1571	0.3639	0	1
자가 여부	4690	0.684	0.4650	0	1
이혼 여부	4690	0.023	0.1500	0	1
가구크기	4690	3.824	1.1827	1	8
월 평균 가계지출(만원)	4680	145.8	85.6	0	1000
월 평균 가계소득(만원)	4314	208	147.5	0	1800
질병여부	4689	0.027	0.1610	0	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자료(5차년도) 및 서울신문사 「2004 개인파산보고서」